

2024년도 제2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록

I 개요

① 일 시: 2024. 4. 12.(금) 14:00 ~ 15:20

② 장 소: 1호관 507호 영상회의실

③ 참석현황: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2명, 불참 8명

■ 참석위원(12명)

- 위원장 유우식, 위원 박종돈, 위원 최병조, 위원 박용호, 위원 박문주, 위원 김석철, 위원 노지승, 위원 김경선, 위원 임조순, 위원 최수봉, 위원 조길수, 위원 이광호

■ 불참위원(8명)

- 위원 한민섭, 위원 김동원, 위원 김동배, 위원 천성철, 위원 이주호, 위원 조병관, 위원 이헌구, 위원 송인석

④ 회의결과(요약)

구 분	안 건 명	심의결과	
보고	인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 보고	-	
심 의	2024-08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수정가결
	2024-09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024-10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원안가결
	2024-11	인천대학교 융합자유전공대학 등록금 기준안	원안가결

II 회의결과

1 보고안건: 인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보고

■ 안건요지 [보고자: 총무과장]

○ 편성규모

가. 편성규모: 957,316천원 (전년 대비 143,166천원 증)

○ 세부사항

가. 세입예산

- 정부지원보육료 단가 5% 인상 (△45,252천원)
- 지자체 지원금 추가 확보 (276,947천원 증)

나. 세출예산

- 보육교직원 호봉 및 수당 상승, 위생원 등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 원장, 보육교직원, 위생원 및 사무원 등 101,889천원 증
- 노후 시설 공사 진행을 위한 예산 반영
☞ 시설 공사 및 놀이비품 인수 등 68,457천원 증

■ 주요질의 및 답변

○ 세입예산에서 지자체 보조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는데, 당초 예산 수립 시 해당 부분을 예상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질의함.

- 지자체 보조금(기관 보육료) 교부에 관한 사항은 개원 이후에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개원 당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므로, 내년 예산 편성 시 예산 수립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어린이집 운영 예산이 23년도 8억 1천만 원에서 24년도 9억 5천 7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원아 수는 감소하였음. 또한 세출예산에서 인건비가 1억가량 증액된 것에 대해 우려가 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임.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검토하기를 요청함.

2 제8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보고자: 교무과장]

○ 제안사유

- 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24.01.05.자)에 따른 봉급 및 근속가봉 인상분 반영
- 나. 겸임이 아닌 대학원 학과장에 대하여 보직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연계전공 및 대학원 협동과정

○ 주요내용

- 가. 교원 봉급표 인상액 및 근속가봉 인상액 반영 (2024. 1. 1. 적용)
- 나. 보직수당 지급 대상표 개정
 - 학과(부)장 지급 대상에 협동과정을 포함하는 대학원 학과장 추가
 - 연계전공 주관학과 주임교수를 보직수당 지급대상표에 추가
 - 적용시기 : 지침 공포일 이후로 적용

■ 심의결과: 수정가결

당초	수정
부칙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의 별표1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 ----- 적용하고, 별표 6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3 제9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보고자: 교무과장]

○ 제안사유

- 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2024.01.05.자)에 따른 봉급 및 근속가봉 인상분 반영

○ 주요내용

- 가. 조교 봉급표 인상액(호봉별 2.5%) 반영 (2024. 1. 1. 적용)

■ 심의결과: 원안가결

4 제10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안건요지 [보고자: 인력개발팀장]

○ 제안사유

가. 2018~2023년 임금협약 체결사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정 지시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반영

나. 경력환산표 개정을 통한 사립학교 외 국·공립학교 교직원 경력 인정기준 마련

○ 주요내용

가. 승급기간의 특례 오기 정정(제7조)

나. 가족수당 지급기준(제11조), 육아휴직수당(제13조), 업무대행수당(제16조) 변경

다.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제18조), 정액급식비(제20조),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제22조) 변경

라. 직원의 봉급표 변경[별표 1(제3조 관련)], 직원 경력환산표[별표 2(제4조 관련)],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별표 8(제23조 관련)],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구분표[별표 9(제24조 관련)]

■ 주요질의 및 답변

○ 임직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은 2018년 이후 처음 상정하는 것으로, 그간 노조 임단협 결과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음. 다만, 정책적 판단에 따라 향후 임단협 체결 시 지침을 개정토록 할 것임.

○ 노동 관계법령 위반 시정 지시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수당의 산출식이 조교와 동일한 지에 대해 질의함.

-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근로감독 시정지시에 따라 통상 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틀이 확립되었으며, 당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조교도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됨.

- 아울러 조교의 경우 임단협에 산식 등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임단협을 기준으로 총장 방침을 받아 지급하고 있음.

-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부족한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예산 범위 내 집행이 가능하게끔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제를 실시하여 인 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초과근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그러나 만약 학교에서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부족해진다면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으나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에 만전을 기하겠음.
- 월정액 시간외근무수당 개정안 중 ‘정액으로 지급한다’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사항에 대해 노조 동의 여부를 질의함.
 - 당초 부서 개정안으로 의견조회 했을 때 삭제하는 것에 대해 노조 측에서 의견이 있었고 협의를 거쳐 노조 측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음.
- 본봉표 책정 시, 공무원 봉급표 기준을 참고했는지 여부를 질의함.
 - 2014년 행정관리수당 본봉화에 따라 공무원 봉급표와 달라지게 되었음.

■ 심의결과: 원안가결

5 제11호 심의안건: 인천대학교 융합자유전공대학 등록금 기준안

■ 안건요지 [보고자: 기획평가과장]

- 제안사유
 - 가.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라 융합자유전공대학 신설 및 등록금 기준 수립
 - 나. 융합자유전공대학 등록금 기준안은 2025년 신입생 입학전형 계획 및 입 시 요강을 위해 진행하며, 2025년 등록금 심의위원회 시 등록금 책정 기 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내용
 - 가. 융합자유전공대학은 우리 대학 이학·체육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등 록금에 별도의 교육체계 지원으로 인한 교육 투자 원가를 포함하여 최종 등록금 확정
 - 이학체육계열 등록금 2,297,000원 + 교육 투자 원가 500,000원(천원단위 절사)
= 2024년 융합자유전공대학 등록금 기준: 2,797,000원

■ 심의결과: 원안가결

폐회선언

- 이상 보고와 논의를 종료하고, 위원장이 15시 20분에 폐회를 선언함